

코웨이 주식회사 내부거래위원회 규정

제정 2026.03.31

제1장 총칙

제1조[목적]

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[적용범위]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[권한]

- ① 위원회는 이 규정 제9조에 열거된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- ② 전항의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으며, 부결 시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[구성 및 임기]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 전원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.

제5조[위원장]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의

제6조[소집권자]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[소집절차]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3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8조[결의방법]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[부의사항]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『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
2. 『상법』에 따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
 - 가. 단일 거래규모가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이상인 거래
 - 나.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이상인 거래
3. 『상법』에 따른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
4.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[관계인의 의견청취]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[통지의무]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즉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[의사록]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칙

제13조[규정의 개폐]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부칙(2026.03.31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2항의 독립이사 명칭 부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